

한여울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제정: 2021.03.01.

개정: 2022.02.16.

개정: 2022.04.13.

개정: 2023.12.2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여울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하 학생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① 본 규정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 ② 본 규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①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 ·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권보호)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⑤ 장애학생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7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3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4 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0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
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
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
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
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
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
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앓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정) 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이내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학부모에게 통보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페널티로 명심 보감 작성)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또는 교장실(교감 부재시 교장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40분이내)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주3회이상 20분 초과 상습적인 지각)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하고 귀가조치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종료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정규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5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20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4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27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

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 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29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25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30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제3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그 밖의 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34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심의절차 및 조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 ·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 · 응답
 4. 담임 ·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 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 · 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의결
-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36조(선도 내용의 통지)

-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8조(결과 처리 · 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생활

<제1절 권리와 책임>

제39조(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 ①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②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 ③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 ④ 말이나 글 등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⑥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상, 징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⑦ 자기정보를 결정하고 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할 권리

제40조(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학 및 전입은 수용 가능 정원 내)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②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④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⑤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42조(장애학생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본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①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체벌을 행하지 않을 책임
- ②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 ③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④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 ⑤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⑥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영위할 책임

<제2절 학생 생활>

제44조(기본품행)

-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교실 및 복도에서 질서를 지키며, 뛰거나 고성으로 타인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학생은 교육활동 시간에 성실히 학습에 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 ④ 등교시간을 준수하며 수업에 늦거나 수업 공간을 무단 이탈하지 않는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및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45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7조(교우관계)

-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 ②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도록 한다.

제48조(양성평등)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동성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49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체육활동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한다.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5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안정된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5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들이 단체모임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5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에 유의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 ⑧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흡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통신>

제5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제5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소지 할 수 있으나 학교 일과 중 교육 목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학부모와 긴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는 교사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④ 교실 내 전화기는 교사의 허가 하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⑤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혐의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55조(회원) 학생자치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56조(학생자치회의 운영)

- ①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와 전교자치회로 운영하며 전교자치회는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능을 갖는다.
- ②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③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④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학생자치회의 구성)

① 학급자치회

- 1. 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 2.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여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 4. 학급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전교자치회

- 1. 전교자치회는 회장(6학년) 1인, 부회장(5,6학년) 2인,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회의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전교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58조(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및 전교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전교자치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급 및 전교자치회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및 청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기당 1회 이상)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학생자치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지도교사는 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0조(협의 · 지원 사항)

- ①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 주요 정책 결정 사항
 - 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회의

1. 전교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급자치회는 학급별 교육과정 내에서 월 1회 이상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한다.

<제5절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보장>

제61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 물품을 열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물품을 열람할 시 개별적으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 ③ 소지품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제36조 ⑥, ⑦ 해당)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일괄적 소지품검사는 금지한다.)
- ④ 소지품검사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소지품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생활안전부장교사 등이 진행하고,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 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6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65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 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제 · 개정

제67조(제 · 개정 원칙)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심의 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6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 개최 통지 시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9조(위원회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0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2조(개정 절차)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3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4조(공포 및 정보 공시)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 후 제·개정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② 학생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제75조(연수 및 교육)

- ① 개정된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7조(기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경우, 고시 내용을 반영한 10조~18조를 우선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 2.16. 개정
- 2022. 4.13. 개정
- 2022. 10.12. 개정
- 2023. 12. 20. 개정